

우편법 시행령 제7조(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)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국제우편규정 제12조의 국제우편물의 특수취급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변경(폐지)함을 공고합니다.

2012. 3. 16.

우정사업본부장

SAL소포, 기록배달우편 폐지에 관한 공고

1. 폐지 사유

- 발송국가가 제한되어 있고 타상품과 차별성이 없는 서비스로 이용물량이 적음

2. 폐지 대상

- SAL소포와 기록배달우편 서비스

3. 폐지 일자 : 2012년 4월 2일